

서울특별시 공공보건의료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 안 설 명

보건복지위원회 김혜련 의원

안녕하십니까?

서초 제1선거구 출신으로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혜련 의원입니다.

오늘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께 본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공공보건의료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고자 합니다.

서울특별시 공공보건의료재단 운영의 근본이 되는 정관의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서울특별시 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사전보고토록 함으로써 재단 운영에 대한 시의회의 견제·감시 권한을 강화하고자 발의한 안으로

서울특별시 공공보건의료재단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서울특별시의회의 소관 상임위에 사전보고 하도록 제6조 제3항을 신설하는 안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일부개정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고, 동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본 의원의 발의대로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